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법무부 공고 제2020-239호,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법무부 공고 제2020-240호, 부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0.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평가 기준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①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②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 수사 축소라고 할 수 있음.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이라고 함) 및 시행규칙은 이러한 핵심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예상되는 혼란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는지가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이러한 핵심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거나, 형해화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는 모법인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최초 검찰개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규정 및 시행규칙은 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 ②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도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영장 청구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2.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한계

- 수사권조정은 검찰의 기능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지향하고 있음. 검찰을 법률적 판단을 통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며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위해 경찰과 협력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그러나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사의 개시 단계 이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아래에서 보는 시행령들의 문제점은 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 수사, 기소 분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수적임.

○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문제점

- 검찰청법 제4조는 수사 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은 중요한 세부 기준을 법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이중의 위임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기재에 의하면, 경제범죄 중 일부(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대상범죄 중 라목부터 카목까지) 및 선거범죄(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행규칙을 통해 검사(검사장)가 판단하도록 한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양한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

-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보건범죄에 해당하는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에 포섭시켜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너목),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범죄에 포함시킨 점(수사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나목)이 그러함.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규정임.

- 검경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불기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도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이 발부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영장 청구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끝.